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519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김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최원영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8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0. 2. 2.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0가소311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B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여 2010. 5. 26. 'B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461,199원 및 그 중 7,354,869원에 대하여 2005. 2. 2.부터 2010. 4.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10. 6. 16. 확정되었다(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리인으로서 2018. 11. 21.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 3)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2019. 3. 29. 현재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21,119,298원(= 원금 7,354,869원 + 이자 13,388,277원 + 가지급금 376,152원)이다.

나. B에 대한 면책 및 파산선고

B는 전주지방법원 2009하면927호, 2009하단92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0. 4. 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2010. 4. 2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로 C단체, D,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E조합, F회사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의 어머니인 G은 2013. 10. 2. 사망하였는데, 망 G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H, 피고, I, B, J, K(상속지분은 각 1/6)이 있었다.

2) 피고는 2014.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0.에는 2017. 3.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4,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10. 2.에는 2018. 10.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라. B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

1) B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9가단100042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B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B는 악의없이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도 미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나 위 법원은 2020. 1. 22. B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과실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B는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가, 2021. 2. 25.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B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2010. 4. 2. 과도한 채무를 이유로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던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점, ③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가 가지고 있었던 임차보증금채권, 자동차 등의 재산의 가액(약 1,300만 원 상당)을 고려해 보더라도, B의 적극재산의 액수가 소극재산의 액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여부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B가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재산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는 B에게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는 2017. 3.경 B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굳이 B의 상속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B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184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B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B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원리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주거지의 전세금을 대출금으로 마련한 사실을 잇는 것은 이례적인 점, B는 대출받을 당시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서와 약정서의 내용을 자필기재하고 서명하였던 점, 비록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B는 당시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졌던 주소에 거주하였을 것이 높히 추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B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과실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점, ③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별다른 대가 없이 B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가 59,9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1/6에 해당하는 금액은 9,983,33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9,98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9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익산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익산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면 적 49.9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익산시 대 19657.4㎡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비율 : 19657.400분의 37.000
이 상.

